

의안번호	2212583
의 퇴 인	안호영 의원
회 답 일	2025. 11. 27.
추 계 번호	25B4740

퇴직연금공단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2조(법인)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함	의무규정
3	안 제3조(설립)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의무규정
4	안 제4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7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관리·감독 지원 2. 퇴직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3.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지원 5.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운용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7.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9.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8조(퇴직연금 연구원)	공단은 제7조제2호 및 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퇴직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9조(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7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0조(임원 등)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급여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함(제1항)	의무규정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름(제2항)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의 추천,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9	안 제11조(기금이사)	상임이사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둬(제2항)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10	안 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함(제2항)	
11	안 제13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함(제1항)	의무규정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제2항)	
		이사는 이사회에 부처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함(제3항)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8조(이사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이사회는 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함(제2항)	
		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됨(제3항)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이사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13	안 제20조(공단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함(제1항)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1조(공단의 회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제1항)	의무규정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함(제2항)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제4항)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함(제4항)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2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3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4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의무규정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연금공단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제2항)	
		공단의 지출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함(제3항)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16	안 제23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4조(잉여금 처리)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25조(예산의 편성 등)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함.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2항)	의무규정
19	안 제26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0	안 제27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자금의 대여 2.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재량규정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제2항)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5항)	
21	안 제28조(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재량규정
22	안 제29조(업무 위탁)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3	안 제32조(출자 등)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조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4	안 제34조(벌칙)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항) 제3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항)	의무규정
25	안 제35조(과태료)	제5조를 위반하여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함(제2항)	의무규정
26	안 부칙 제2조(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1항)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제2항)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함(제3항)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함(제4항)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봄(제5항)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함(제6항)	의무규정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제8항)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은 제10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함(제9항)	의무규정
27	안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등)	이 법에 따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일체 2.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17호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연구센터 일체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목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2조(법인)		
3	안 제3조(설립)		
4	안 제4조(사무소)		
5	안 제7조(공단의 업무)		
6	안 제8조(퇴직연금 연구원)		• 미대상 - 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의 곤란함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기금운용 인력 양성의 시행 및 위탁 주체는 공단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9조(기금운용 인력 양성)		
8	안 제10조(임원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9	안 제11조(기금이 사)	—	• 미대상 - 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기금이사·임원의 임기·직무·이사회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12조(임원의 임기)		
11	안 제13조(임원의 직무)		
12	안 제18조(이사회)		

1) 제정안에 따른 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금의 대여
2.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3	안 제20조(공단에 대한 감독)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으로 퇴직연금공단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이나 관리운영비 소요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할 사항으로, 조직 및 정원의 확대는 인력운용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4	안 제21조(공단의 회계)	—	• 미대상 – 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단의 회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5	안 제22조(공단의 수입·지출)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16	안 제23조(자금의 차입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자금의 차입·잉여금 처리·예산의 편성 등·결산서의 제출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7	안 제24조(잉여금 처리)		
18	안 제25조(예산의 편성 등)		
19	안 제26조(결산서의 제출)		

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정안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20	안 제27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등¹⁾의 복지사업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곤란함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의 시행 주체는 공단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1	안 제28조(노후준비서비스)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제2호²⁾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등³⁾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후준비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이 곤란함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의 시행 주체는 공단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2	안 제29조(업무 위탁)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으로 업무 위탁 대가 지급에 따라 공단 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다만, 업무 위탁의 주체는 공단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23	안 제32조(출자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 제7조제7호4)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4	안 제34조(벌칙)	—	• 미대상 — 제정안은 자료제공의 요청을 거부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5)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5	안 제35조(과태료)		
26	안 부칙 제2조(퇴직연금공단의 설립 준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4	안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일체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17호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연구센터 일체의 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4) 안 제7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7.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 5)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이하 생략)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의 업무·조직·구성 및 운영과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안 제8조), 공단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안 제10조) 등임
 - 또한, 제정안은 공단의 수입으로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연금공단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2조) 있어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단의 조직형태, 정원,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현시점에서 공단의 인건비·운영비 등 재정소요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우며,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곤란
- 제정안의 부칙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

하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단설립위원회의 인적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시점에서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등 경비 일체의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희	02-6788-3737	nhee@nabo.go.kr